

# 프랑스 스포츠법제에 관한 소고

## L'étude sur le droit du Sport en France

전 훈 (Hoon Jeon)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논문접수 : 2017. 2. 7.

심사게시 : 2017. 2. 13.

게재확정 : 2017. 3. 9.

## 목 차

- I. 서론
- II. 스포츠법의 탄생
  - 1. 스포츠 개념에 대한 법적 접근
  - 2. 스포츠법의 독자성
- III.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규칙
  - 1. 스포츠 조직
  - 2. 스포츠 규칙
- IV. 결론

## 국문요약

체육의 뉘앙스가 강한 ‘스포츠(sport)’의 어원은 신체나 정신의 기쁨이나 오락을 의미하는 옛 프랑스어인 desport에서 기원을 찾는다. 어원상 스포츠 개념은 신체나 정신의 활동이 주는 유희적 측면이 고려된 것인데, 법제도나 정책의 대상으로서 공공공서비스의 성질을 부여받게 된 오늘날의 스포츠는 운동(시합)의 경합의 의미에 더하여 제도화된 조직과 국가의 실정법과 구별되는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규칙과 스포츠에 관한 분쟁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프랑스에서의 스포츠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어 학문적 논의와 함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법적 개념과 독자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프랑스 스포츠법의 윤곽은 제도적 측면과 국내외 경쟁시합을 통한 스포츠 활동에서 야기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으로 소개될 수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스포츠법제와 입법론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프랑스 스포츠의 조직과 운영은 클럽(Club)으로 알려진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협회와 연맹(Fédération)이 가지는 지위의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 사법이나 공법상 조직과 구별되는 스포츠 조직이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은 또 다른 주요 관심 항목인 스포츠법의 독자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각종 스포츠 기구의 경기규칙이나 도핑관련 국제기구의 규정들과 국내 실정법과의 관계는 스포츠법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에 의한 시사점을 통해 스포츠법의 독자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스포츠법제의 입법수준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주제어: 스포츠 개념, 스포츠 규칙, 스포츠법, 스포츠법의 독자성, 스포츠연맹, 사법심사의 배제

## I. 서론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sport)라는 단어는 프랑스 고어인 ‘desport’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sup>1)</sup>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desport’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어 déport 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이른바 여가로서의 스포츠와 가까운 의미는 ‘~로부터의 회피 또는 면제’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과 프랑스의 ‘위키피디아’ 웹사이트에서 나타난 설명은 “시간이 무탈하게 잘 지나가게 해주는 수단들(ensemble des moyens)가운데 하나로서 스포츠 활동이 주는 유희적 측면을 강조한 것”<sup>2)</sup>으로 이라고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 활동과 각종 정부정책의 대상으로서 스포츠 개념에 대한 법적 혹은 제도적 접근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별적 스포츠 활동의 다양성은 스포츠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스포츠법제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프랑스 스포츠법이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본다.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 자료나 일본문헌을 참고하여 작성된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체육 관련 행정조직과 정책의 구조와 사례분석 등이 주류를 이룬다.<sup>3)</sup>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의 귀중한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대한 법령에 대한 소개나 스포츠법제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윤곽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의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스포츠 개념에 대한 법학자들의 견해나 판례를 통해 나타난 스포츠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II. 1. 스포츠법의 탄생), 이른바 스포츠법의 독자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개괄적 소개를 시도하고자 한다(II. 2. 스포츠법의 독자성). 그리고 프랑스 스포츠 조직의 특징과 협회와 연맹과 국제 운동경기조직

1) 현재 한국어판 위키피디아에서도 “스포츠(Sports)란 영어에서 온 외래어로서 운동경기(運動競技)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래 여가를 뜻하는 옛 프랑스어 desport에서 유래한 단어이다”고 적고 있다(<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F%AC%EC%B8%A0>, 검색일자:2016년 11월 5일). 그런데 프랑스판 위키피디아(<https://fr.wikipedia.org/wiki/Sport>, 검색일자:2017년 1월 25일)에서 검색한 내용을 추가해보면 “sport의 어원인 고어 desport는 《신체나 정신의 기쁨이나 오락(기분전환)》을 의미하는데, 점차 영어의 영향을 받아 de가 떨어져나가고 sport로 변화되었고, 그 의미도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가져다주는 여가라는 측면으로 모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2) Charles Amson, Droit du Sport, Vuibert, Paris, 2010, p.8

3) 신재후,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시설 경영의 사회-경제적인 분석-프랑스 그르노블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35권 제2호, 한국체육학회, 1996, 432-442면; 이광윤,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스포츠와 법 제9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2006.10., 229-246면; 임우택, “프랑스의 스포츠 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연구 제16집, 성신여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1998.2, 139-151면; 임재구, “프랑스 체육정책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4호, 한국체육정책학회, 2004.9., 125-142면.

에 대한 프랑스 스포츠법상의 지위를 살펴보기로 한다(Ⅲ. 1. 스포츠 조직). 한편 스포츠는 “규칙과 법률의 세계(un univers de règles et de lois)”라고 비유되는데<sup>4)</sup>, 스포츠법의 실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가 또는 경기단체의 규칙에 대해 그 성질과 의의를 살펴보는 것도 프랑스 스포츠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법의 실질적 내용인 스포츠 규칙의 성질과 특성의 이해는 스포츠법의 독자성(lex sportiva)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생각된다(Ⅲ. 2. 스포츠규칙).

## II. 스포츠법의 탄생

### 1. 스포츠 개념에 대한 법적 접근

#### 가. 스포츠와 법의 만남 - 프랑스 스포츠법의 발전

프랑스에서 스포츠에 관한 법적인 측면의 연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제도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쿠베르탱(Pierre Coubertin)남작이 주도로 1894년 6월 23일에 설립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문 IOC로 표기한다)의 설립을 전후로 스포츠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언급되고 있다.<sup>5)</sup> 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공법적 접근을 경쟁, 규제와 제도화의 관점에서 체계적 논의는 장 루(Jean Loup)의 노력을 들 수 있다.<sup>6)</sup> 당시 공법학자들은 스포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시도하면서 신체활동, 성과, 경쟁, 제도화된 규칙이라는 4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sup>7)</sup> 장 루의 「스포츠와 법」(1930) 이전에도 1906년에 R. Dieudonne의 박사 학위논문이 있지만 1930년의 J. Loup의 연구를 국내 선행 자료<sup>8)</sup>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점에는 무리가 없

4) Gérard Simon, Puissance publique et ordre juridique étatique, LGDJ, 1990, p.1.

5) Charles Amson, op.cit., p.5

6) Jean Loup, Les sports et le droit, Dalloz, 1930; Frédéric BuyéJean-Michel MarmayouéDidier PoracchiaéFabrice Ricco, Droit du Sport, 2e édition, LGDJ, Paris, 2009, p.7.

7) Gérard Simon, Puissance sportive et ordre juridique étatique, LGDJ, 1990, p.20이하 부분에서 상론하고 있다. 그 밖에도 G. Mollion, Les fédérations sportives. Le droit administratif à l'èpreuve des groupements privés, LGDJ, 2005, p.60이하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8) 임우택, 앞의 논문, 142면.

다고 본다. 그리고 프랑스 스포츠법은 대학차원에서 이전 학제인 DESS과정<sup>9)</sup>에서 스포츠법 학위과정과 커리큘럼을 둔 대학들이 나타나면서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sup>10)</sup> 그리고 1979년 이후 Recueil Dalloz, 2001년 이후 Journal de droit international과 같은 학술지에서 스포츠법 분야의 지면을 할당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에 관련된 판례와 이론들이 정기적으로 연구 및 평석을 통해 나오고 있다.

스포츠법의 독자성과 관련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잠시 스포츠법에 대한 개념인식을 언급하자면 먼저 스포츠라는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는 일반적 접근과 스포츠에 대한 특별한 정의에 비중을 두는 입장이 있다. 비단 프랑스 스포츠법에서만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sup>11)</sup> 앞의 두 번째 시각의 경우 각종 국제대회와 국제경기협회의 조직규범에 대한 특징에 기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첫 번째 견해의 경우, 스포츠 분야의 법규전반에 대한 연구라는 일반적 설명이긴 하지만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신체행위와 게임 전체로서 이를 통해 신체와 정신의 발전과 휴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스포츠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스포츠 활동이 “경쟁의 정신과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엄밀하게 두 견해가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sup>12)</sup>

스포츠 개념의 특수성과 그 자체의 고유성을 주장하는 것과 이른바 여가로서의 스포츠와 경기로서의 스포츠의 구별, 그리고 더 나아가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구별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구별되어지는 스포츠에 적용되는 스포츠법의 구별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sup>13)</sup>은 스포츠 또는 스포츠법의 동질성에 대한 개념정의나 기준이나 스포츠 정책이나 스포츠 관련 소송에서 나타나는 법적인 의미의 성질 또는 지위의 파악에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프랑스 국내법과 구별되는 국제법적 차원의 검토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럽법은 프랑스 국내법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유럽스포츠헌장 제2조는 스포츠 개념에 대해 “조직화된 흑

9) Diplôme d' études supérieures spécialisées. 직역하면 전문 고등연구학위가 되는데 종래 프랑스 고등교육 학제에서 4년차를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는 이수하는 1년 과정의 DEA와 함께 DESS가 있었다. 이 학위는 일반 연구자 과정인 DEA와 달리 3개월 내지 6개월의 연수과정이 있어서 학문 연구 보다는 전문직 취업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10) Nice 대학 Pierre Collomb교수의 주도로 스포츠법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Aix-marseille 대학교의 스포츠법 연구소가 Fabrice Rizzo 교수의 주도로 DESS(현재는 Master)과정이 설치되었다.

11) 특히 미국 문헌으로 T. Dannis, “What is sports Law”, Marquette Sports Law Review, vol.11, 2000-2001, p.211; C. Armon, op.cit., p.8. 영어자료의 원문은 아래 PDF로 검색할 수 있다.  
(<http://scholarship.law.marquette.edu/cgi/viewcontent.cgi?article=1517&context=sportslaw>)

12) 필자가 참조한 C. Armon의 문헌에서는 위 두입장의 주장자에 대한 언급은 따로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후기는 바와 같이 스포츠법은 다른 법 영역에 비해 독자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두 번째 입장에 비중을 둔 절충적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3) 위의 각주에서와 같이 필자가 인용한 C. Armon의 책(9면)에 공감하는 취지에서 논의제기를 하였다.

은 그렇지 않은 참여를 통해서 신체나 정신의 표현이나 발전,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나 각각의 수준에서의 경쟁을 통한 결과의 획득이라는 목표를 가진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 나. 판례를 통해 본 스포츠의 요소

스포츠법은 학계와 판례를 통해 스포츠의 법적 개념과 스포츠법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지만 아직도 분명한 통일적 견해가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포츠에 대한 개념 파악은 학문적 관심뿐만 아니라 현실적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판 과정에서 스포츠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스포츠 개념에 대한 법적 인식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프랑스는 행정사건을 전속하여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司法)법원이 서로 독립적인 이원화된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원의 판례 어디에서도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의에 관한 의문에 대해 분명히 답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사법(司法)법원의 경우 Aix-en-Provence 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어떤 활동이 스포츠로서의 성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희적(ludique)이고 신체적(physique)이며 감정적인(émotionnel)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14)</sup>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다른 견해를 취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법원의 경우 신체적 활동(la performance physique)과 정기적으로 경쟁시험의 개최(la tenu de compétition) 그리고 정교하게 잘 갖추어진 규정의 존재(des règles bien définis)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이데타(Conseil d’Etat)는 페인트볼(서바이벌 게임)<sup>15)</sup>이나 브릿지게임<sup>16)</sup>에 대한 스포츠로서의 성질 여부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표명한 바 있다. 그렇지만 서양장기나, 볼링, 플라잉시 등에 대한 스포츠로 인정하고 해당 협회의 인가증 발급을 인정한 바 있다. 체육관련 부처의 훈령(arrêté)-서양장기의 경우 2005년 1월 27일자 훈령, 볼링은 1993년 8월 20일자 훈령, 플라잉시의 경우 2004년 12월 17일 훈령-이 공포되었다. 다만 2005년 훈령 제정 전인 1993년에 서양장기협회가 정부의 인가증 발급 거부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콩세이데타는 정부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sup>17)</sup>

14) CA Aix-en-Provence, 8 avril 1998, Bulletin Aix 1988-1, p.355.

15) C.E. 13 avril 2005, Fédération de paintball sportif, req.n° 258190.

16) C.E. 26 juillet 2006, Fédération française de bridges, req.n° 285529.

17) (C.E. 28 avril 1993, Fédération française des échecs, req.n° 107742).

## 2. 스포츠법의 독자성

### 가. 스포츠법의 독자성

국가의 실정법(droit étatique)으로부터 스포츠법의 독자성(l'autonomie du droit du sport)이란 말이 주는 의미는 사뭇 상징적이다. 국가의 법질서와 구별되는 초국가적인 사적인 스포츠 사회의 질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주장은 이탈리아 법학자 산티 로마노(Santi Romano)가 주장한 바 있다.<sup>18)</sup> 국가의 법질서(l'ordre étatique) 이외의 법질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법질서가 아닌 통일성과 조직화된 초국가적인 스포츠 영역의 규율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법질서(l'ordre juridique)와 같은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서유럽에서 근대 법 이전에도 이미 존재해왔던 길드와 같은 직업단체의 규율이나 종교법의 독자성처럼 스포츠법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지는 흥미로운 주제라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의 결정이나 IOC나 FIFA의 결정이 과연 한 나라의 국가 법질서 아래 서열에 위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경청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고 무거운 주제이고 프랑스 스포츠법을 소개하는 본고에서 제대로 검토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프랑스 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프랑스 법원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와 구별되는 고유한 스포츠법이라는 법질서의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인용문헌<sup>19)</sup>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우선, 리옹 항소법원은(Cour d'Appel de Lyon) 프랑스 축구연맹의 Charte de football professionnel(직역한다면 프로축구현장 정도가 된다) 규정에서 청소년 선수들이 프로데뷔 첫 계약을 자신을 양성해 준 클럽이 아닌 다른 팀과 하지 못하도록 조항에 대해 이를 무효라고 판시하였다.<sup>20)</sup> 또한 프로축구팀 스포터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파리 1심 행정법원은 경기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한 이들 스포터들의 클럽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원칙인 손해배상책임(역무상 책임이 아닌 인적 책임을 뜻하며 이때는 민사상 손

18) Santi Romano, L'ordre juridique, 2e édition, 1946, 불어 번역은 L. Francois et P. Gothot, Dalloz, 1975; Frédéric Buy·Jean-Michel Marmayou·Didier Poracchia·Fabrice Ricco, Droit du Sport, 2e édition, LGDJ, Paris, 2009, p.22.

19) Frédéric Buy·Jean-Michel Marmayou·Didier Poracchia·Fabrice Ricco, op.cit., p.23.

20) CA Lyon, 26 février 2007, JCP S2007, p.1344.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 하여 재차 이를 확인한 바 있다.<sup>21)</sup>

한편 프랑스 행정법원은 스포츠법의 독자성에 관해 다음 세 가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첫째는 스포츠 시합의 심판의 판정이나(décision d'arbitrage)<sup>22)</sup> 이나 협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소극적 태도를 표명한다.<sup>23)</sup> 프라그마틱한 이러한 태도는 스포츠 경기진행이 법원의 개입으로 굳이 중단될 것까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접하게 되면 국가법과 스포츠법의 경합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게 된다. 다만 최고 행정법원은 역도-보디빌딩 협회(Fédération Française d'haltérophilie- musculation et culturisme)의 90킬로 이상 체급 챔피언 결정전의 판정과 관련해, 비록 스포츠 시합의 심판 판정과 동 협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법의 일반원칙이나 법령해석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sup>24)</sup>

둘째로 비례성 테스트를 들 수 있다. 일종의 비용-편익평가(le bilan coûts-avantages)를 통해 어떤 스포츠 규범이 비례성에 관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규범이 권리침해나 일반원칙에 대한 위반이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 규범이 그 제정 주체(일반적 국제스포츠 기구나 연맹을 생각해 볼 수 있다)가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문제가 된 규정과 실행된 수단 간에 정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인정하게 된다.

세 번째는 앞의 두 입장 보다는 전향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법규의 태생적인 유연성을 수용함으로써 국가의 실정법의 전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육상이나 축구등과 같은 스포츠 분야의 경우 훈련이나 연습 중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다. 스포츠 행위자들의 과실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의 행동의 평균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축구경기 중 수비선수의 방어과정에서 일어난 몸 싸움 과정에서 충격으로 치아가 손상된 경우 등). 최고사법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유사한 사안에서 문제의 행위는“ 어떤 특별한 가해성이나 악의성을 나타내지 않는 데, 스포츠규칙과 스포츠 행위의 충실성(loyauté de la pratique du sport)을 위반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21) TA Paris, 16 mars 2007, Cahier du droit de sport 2007, n° 8, p.146.

22) C.E. 13 juin 1984, req. n° 44648, Association club athétique Mantes-la Ville, Rec. p.218.

23) C.E. 13 juin 1984, req. n° 44648, Association club athétique Mantes-la Ville, Rec. p.218.

24) C.E. 25 janvier 1991, req. n° 104497

전기했던 스포츠 개념에서 언급했던 조직화된 경기를 정기적으로 체계적(필자는 일종의 계층적 관계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조직이나 기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의 다름은 그 성질이 순수한 사법적이든 공법적 요소가 같이 있던 간에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가법질서를 배제하는 스포츠법의 독자성 주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스포츠의 조직과 운영이 공법적 특징, 특히 프랑스에서 강조되는 공공서비스 임무를 이들 스포츠단체에 인정하고 있고,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가의 법전화 작업 등을 고려해본다면 일종의 특별법 또는 전문법으로서의 스포츠법의 탄생과 발전을 이른바 스포츠법의 독자성의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살피본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스포츠법의 이해와 접근이 유의미한 노력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나. 스포츠법의 법전화(la codification)<sup>25)</sup>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프랑스에서 공식적인 스포츠법전의 탄생은 2006년 5월 23일 오르도낭스의 공포를 통해서부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법전에 대한 연구는 학계와 전문가들에 의해 1997년 Dalloz출판사의 Code du Sport의 발간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현재 제11판이 2016년 6월에 개정출간되었다). 달로즈 출판사에서 나온 스포츠법전은 당시 산재한 스포츠 관련 법령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나의 스포츠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스포츠와 스포츠 단체에 대한 일반(공통)법적 내용과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의 판단사항들을 주석을 통해 해당 부분에서 부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병행하여 정부의 공식적 스포츠법 의 법전화작업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2004년 12월 9일 법률은 정부의 2006년 5월 23일 오르도낭스(제2006-596호)를 통해 Code의 법률부분에 대한 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법령의 명령에 관한 규정들(Partie réglementaire)은 1년 뒤인 2007년 7월 24일 데크레(제2007-1132호와 제2007-1133호)를 통

25) 현재 프랑스의 Code는 종전의 관련 법률(Loi), 법규명령(Décret), 훈령(Circulaire)규정들을 각 Code의 체계와 내용에 따라 편-부-장-절의 해당사항을 정한 뒤에 그에 맞도록 종전의 개별법령 조항들을 의회가 만든 법률부분(Partie législative)과 정부가 만든 명령부분(Partie réglementaire)으로 새로이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후술하는 III.-1.스포츠조직 부분에서 언급될 Code du Sport의 L121-1을 부연해서 설명하면 L은 법률을 뜻한다. 그리고 제일 앞부분 1은 1편(Livre premier), 2는 두 번째 Titre인 스포츠협회와 단체(associations et sociétés sportives), 세 번째 1은 그 중의 제1장(스포츠협회, association sportive)을 뜻한다. 스포츠법전의 경우는 세 단위(L.○○○)로 하지만 법전에 따라서는 네 단위 L.○○○○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L.121-1등 아래 단위로 더 숫자가 들어나는 것은 마지막 단위(스포츠 법전의 경우는 장Chapitre)의 조문 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이다. 스포츠협회에 관한 조항은 모두 19개이다. 따라서 L.121-1에서 L.121-19로 번호가 붙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찬방식은 새로운 개별 법률이 제정, 개정되더라도 Code편집상 큰 어려움 없이 체계적으로 법제정비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8년 2월 28일 훈령(arrêté)을 통해 마지막 명령규정 부분인 Partie A가 추가되었다. 명령 조항 부부는 다시 2007년 7월 24일 데크레에 의해 모두 71개의 데크레 조항을 폐지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08년 2월 28일에 전기한 Partie A부분이 정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정비 과정을 통해 성립된 스포츠법전의 성취는 국가법질서와 스포츠(법)질서간의 새로운 협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라틴어 표현을 빌리면 “lex sportiva”의 확인을 통한 스포츠법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현행 스포츠법전은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의 조직, 스포츠인, 스포츠활동, 기타규정으로 구성된 4개의 부(Parti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스포츠분야에 관한 파편화되어 있는 규범들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의 실질적 변경 없이 다시 재정비 및 배치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관련 제 규정의 체계적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한 주요 제목 이름만 아래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7)</sup>

## 제1부 신체와 스포츠 활동조직(Organisation des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

### 총칙(Titre Préliminaire)

#### 제1편 공법인

##### 제1장 국가

##### 제2장 국가영조물법인

##### 제3장 지방자치단체

##### 제4장 스포츠 기록평가, 선수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국가와 레지용간 임무와 권한의 배분

##### 제5장 특정 스포츠 공공서비스의 관리조직에 관한 특별규정

#### 제2편 스포츠단체와 스포츠기업

##### 제1장 스포츠단체(Associations sportives)

##### 제2장 스포츠회사(Sociétés sportives)

#### 제3편 스포츠연맹과 프로리그

##### 제1장 스포츠연맹(Fédération sportives)

##### 제2장 프로리그(Ligues professionnelles)

26) Isabelle Da Silva, “L’adoption du Code du sport: Concacration pour le droit du sport”, AJDA, 2007, p.1623.

2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1318&dateTexte=20161123>

제4편 대표기구와 중재기관

- 제1장 프랑스 국가스포츠올림픽위원회
- 제1-1장 프랑스 장애인스포츠위원회
- 제2장 기타 기구

제2부 스포츠인(Acteurs du sport)

제1편 양성과 교육

- 제1장 직업스포츠 양성
- 제2장 무보수 스포츠교육

제2편 운동선수

- 제1장 엘리트스포츠(Sport de haut niveau)
- 제2장 직업선수
- 제3장 운동선수에 적용될 기타 조항
- 제4장 스포터(Supporteurs)

제3편 운동선수의 건강과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  
서장

- 제1장 운동선수에 대한 약물조사
- 제2장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

제4편 동물에 대한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

제3부 스포츠의 실행(Pratique sportive)

제1편 스포츠 실행장소

- 제1장 자연스포츠
- 제2장 스포츠시설장비

제2편 스포츠 활동에 수반된 의무사항

- 제1장 보험가입의무
- 제2장 위생과 안전의 보장

제3편 스포츠 대회(Manifestation sportive)

- 제1장 스포츠대회의 조직
- 제2장 스포츠대회의 안전
- 제3장 스포츠대회의 경영(Exploitation des manifestation sportive)

제4부 기타 규정(Disposition diverses)

제1편 스포츠 재정

제2편 해외영토지역에 적용되는 규정

- 제1장-5장(Mayotte, Saint-Pierre-et-Miquelon, Wallis et Futuna, Polynésie française, Nouvelle-Calédonie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 Ⅲ.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규칙

#### 1. 스포츠 조직

현행 프랑스법전 제1편은 신체와 스포츠 활동조직(기구)(L'organisation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의 제목 하에 제1장 스포츠 분야에 개입하는 공법인( Personnes publiques), 제2장 스포츠협회와 단체(les associations et sociétés sportives) 그리고 제3장 스포츠연맹과 프로 리그(Fédérations sportives et ligues professionnelles)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가. 클럽(Clubs)

스포츠 가장 기초적인 조직형태로 클럽을 소개할 수 있다. 클럽은 비영리사단의 전통적 유형(des associations de type classique)인 아마추어 클럽과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스포츠 단체(des groupements sportifs)인 직업(프로)클럽(les clubs professionnels)이 있다.

스포츠법전 법률조항 제121-1조(art. L.121-1)은 단체설립에 관한 1901년 7월 1일 비영리사단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스포츠단체(association sportive)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기본적으로 계약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전기한 1901년 비영리사단계약법<sup>28)</sup>에 따라 규율되는데<sup>29)</sup>,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의 경우 대부분 전통적인 단체(association)의 형태로 등장한다. 스포츠 법전은 아마추어 클럽의 법적 지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과 사법적 법률관계의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L.321-1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마추어 클럽간 또는 클럽 소속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sup>30)</sup>

직업(프로)클럽, 특히 축구계는 지난 20년 동안 해외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자신들의 특별한 법적 지위에 대한 입법적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sup>31)</sup>

28) 동법 제1조는 비영리사단(아소시아시옹, association)은 “2인 또는 복수의 사람의 공통의 합의를 통해 계속성을 가지고 이익을 나누지 않는 목적 하에 자신들의 인식과 활동을 함께하는 것(une convention par laquelle deux ou plusieurs personnes mettent en commun, d’une façon permanente, leurs connaissances et leur activités dans un but autre que de partager des bénéfices)”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9) 다만 지역,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갖는 Bas-Rhin, Haut-Rhin, Moselle 데파르트망에 소재하는 단체는 Code civil local의 제27조-79조의 규율을 받는다.

30) Cass. Civ.16 juillet 1986, Bull.Civ. n° 209; Charles Amson, op.cit., p.23.

31) 프랑스 직업 스포츠의 운영은 상당히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축구는 DNCG(Direction national de contrôle de gestion), 럭비는 DNACG(Direction national d’aide et de contrôle de gestion)등과 같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프로리그를 가진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찾기 어렵다(Charles Amson, op.cit., p.23, 각주11번)

먼저 1975년 일명 마조(Mazeau)법으로 불리는 체육, 스포츠 발전에 관한 10월 29일 법률(제75-988호)에서 “정기급을 지급받는(rémunérés) 직업선수나 경기자를 고용하거나 하고 있는 스포츠 단체(des groupments sportifs)는 지방공사혼합회사의 형식으로 스포츠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뒤 1984년 법 개정을 통해 회사형식의 경우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à objet sportif, SAOS)와 공사혼합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d'économie mixte sportive locale, SAEMSL)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3년 뒤에 제정된 베르저랭(Bergelin)법(법률 제87-979호)에서는 직업스포츠클럽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였고, 전기한 1984년 법률을 대폭 수정한 1999년 12월 28일 법률을 통해 주식회사(SAOS), 프로스포츠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sportive professionnelle, SASP), 1인 유한책임회사(Entreprise unipersonnelle sportiv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EUSRL) 등의 3가지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동 법률 조항은 스포츠법전 법률조항 제121-1조에서 제121-12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현실적으로 SASP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주식회사형(SAOS) 모델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이익배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회사자본에 충당하며(스포츠법전 L.122-10조) 회사 운영진에 대한 보수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프로스포츠주식회사형(SASP) 모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와 비교될 수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프로스포츠 회사의 경우, 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배분한다. 앞의 SAOS와는 달리 SASP의 이사회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는 비영리후원단체(association support)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모델인 1인 유한책임회사(EUSRL)모델은 1인 출자자 형태로 나타나며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이익은 투자준비금(la constitution de réserves)에 충당되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1인 출자자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으로부터 나오는 사실을 통해 유연성을 가지고 강화되어 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sup>32)</sup>

## 나. 협회(Fédération)

일반적으로 협회나 연맹(프랑스에서도 fédération 혹은 Union이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있다)으로 알려진 국내 스포츠단체의 법적 조직은 국가와 이들 단체와의 관계에 따라

32) Charles Amson, op.cit., pp.24-26.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해 특정한 스포츠 단체의 경우 이들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임무의 인정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칭에 Fédération(이하에서는 ‘협회’로 번역하기로 한다)을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 인구의 15% 정도가 ○○‘협회’로 번역될 수 있는 Fédération sportive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스포츠 예산의 미미한 부분을 이들 스포츠협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조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뒤늦었지만 깨닫기 시작했다. 사회연맹(Unions de sociétés)이라는 명칭으로 20세기 초에 먼저 등장했던 스포츠협회는 1945년 8월 28일 오르도낭스(제45-1922호)에 의해 폐지된 1940년 12월 20일 법률에 의해 처음으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동법 규정에서 규정한 스포츠 단체(비영리사단)는 국가스포츠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협회로 묶여졌는데 행정당국의 조직기구와 공무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나, 나찌스 정권에서 수복된 이후 스포츠활동에 대한 조직을 규율하는 기본적 조항들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스포츠협회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공공서비스로 정식으로 인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전기한 1945년 오르도낭스에서 국가가 스포츠협회에 경기시합에 관한 허가권한을 위임하도록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국가적 공공서비스로 전면적으로 인정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법원이 스포츠의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스포츠협회에 대해 1901년 비영리사단법인법의 적용을 인정한 것은 콩세이데타의 스포츠산업협회(Fédération des industries françaises de sport, Fifas) 판결(1974)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다.<sup>33)</sup> 이 사건은 프랑스 탁구협회가 개최한 경기시합에 사용되는 탁구공 공인인증 요건에 관한 탁구협회 규정 제7조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법원은 탁구협회가 이와 관련해 스포츠산업협회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는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와 유사하다고 보았고, 공인인증절차는 일종의 행정행위(우리의 행정처분에 비교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탁구협회는 위의 1945년 8월 25일 오르도낭스(ordonnance) 규정에 따라 정부가 스포츠협회에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뒤 1975년 10월 29일 법률과 1981년 사회당 정권의 교체의 후속으로 신체 및 스포츠활동의 조직과 촉진을 위한 1984년 7월 16일 법률(법률 84-610호), 일명 Avice법(당시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제정되어 스포츠조직과 기구에 관한 부분과 직업(프로)스포츠와 단체 등에 관한 대폭적인 정비가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음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공서비스라고 법률 조항

33) C.E. 22 novembre 1974, req.n° 89828, Fifas

에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동법은 또한 스포츠연맹(des fédérations)에 대하여 이전에 비해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였다(법률 제16조, 후에 2000년7월 6일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현재 스포츠법전 L. 1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 다. 프로리그(des ligues professionnelles)

프로리그는 스포츠협회와는 달리 항상 존재해왔던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프로리그는 단지 스포츠 협회의 내부에서 특정한 종목의 경우 경기시합을 운영관리하거나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업 스포츠 선수의 직업 활동의 운영과 관리조직으로 이해되어졌다. 1984년 7월 16일 법률 이후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프로리그의 임무와 관련해 1985년 2월 13일 데크레 제85-236호의 부칙 제20조가 관련 조항을 두면서부터 묵시적으로 일종의 자매 단체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뒤 1990년 4월 13일 데크레에서 명시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게되었다.<sup>34)</sup> 콩세이데타는 1991년 5월 15일 보르도 풋볼 클럽 판결에서 경기운영규정의 제정에 관해 축구협회와 프로리그의 우월적 지위를 구별하였다.<sup>35)</sup> 동 판결 이후 이른바 Buffet법(1999) 제17조-II에서 프로리그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고, 현행 스포츠법전 법률편 제13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임받은 스포츠협회는 협회에 소속된 단체와 스포츠 팀의 직업 스포츠 활동의 대리, 관리와 조정을 위해 프로리그를 창설할 수 있다.”<sup>36)</sup> 예를 들자면, 프랑스 럭비협회는 1998년 7월 24일에 럭비리그를 창설하였고, 프랑스 전국 핸드볼 리그도 2004년 5월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활동을 하는 모든 스포츠협회가 프로리그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프랑스 사이클연맹은 연맹 안에 별도의 프로리그를 창설하지 않고 있다. 법률이 프로리그와 협회간의 의존관계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협약(une conven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자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협약은 스포츠협회가 프로리그에 대해 프로리그의 경기 운영에 관한 상업적 운영권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4) Frédéric Buy·Jean-Michel Marmayou·Didier Poracchia·Fabrice Ricco, op.cit., pp.118-119.

35) C.E. sec., 15 mai 1991, Association des Girondins de Bordeaux Football Club, req. n° 124067.

36) “les fédérations délégataires peuvent créer une ligue professionnelle pour la représentation, la gestion et la coordination des activités sportives à caractère professionnel des associations qui leur sont affiliées et des sociétés sportives”

## 2. 스포츠 규칙

### 가. 스포츠 규칙의 성질

스포츠 규칙의 존재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은 그 종목을 조직하고 주관하는 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 실제로 스포츠 규정은 모든 수준의 스포츠 활동에서 나타나는데 단순히 경기의 기본 규정과 승패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경기의 이용과 관련한 시스템의 조직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

앞서 스포츠법의 독자성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은 경기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의 원칙적인 배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스포츠기구는 매우 많은 스포츠규범을 제정하고 있고, 수범자 또한 매우 다양하고 그 성격 또한 전적으로 기술적 성격을 가진 것이 많다. 하지만 이들 기술규범이 상당 부분 관습적 연원을 가진 기술규정인 경우가 매우 많고, 그리 많지 않은 경기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경기규칙은 해당 시합의 운영, 결과, 경쟁의 내용을 결정하며 일반적인 법질서와는 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스위스 법학자 Kummer 교수는 스포츠 활동은 대부분 엄격한 의미의 스포츠 규칙에 의해 지배되며, 위 스포츠규칙은 시합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참여자들이 “경기현장(sur le terrain)”에서 어떤 방법을 지켜야 할지를 지시하도록 하여 경기의 정상적 진행(la régularit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sup>37)</sup> 그러면 이러한 스포츠 규칙도 사법적 통제를 받는가 하는 점은 결국 스포츠법과 국내법질서로부터의 독자성과 무관하지 않은 질문이라 할 것이다. 프랑스 스포츠법학자 Simon교수는 스포츠 활동의 조건의 결정은 전적으로 경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스포츠연맹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른바 “창립규칙(des règles fondatrices)”에서 기술하고 있는 특징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포츠 규칙의 법적 성질은 법원이 계류된 스포츠규칙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련된다. 1956년 스위스 쥐리히 칸톤(canton de Zurich)상고법원은 축구시합의 결과에 대한 주관 스포츠단체의 결정에 대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스포츠 심판기관의 결정에 대한 일반 법원의 사법적 심사의 배제를 의미한다.

또한 경기심판의 판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시간적으로나 정상적인 경기진행에 대한 우려와

37) Charles Amson, op.cit., pp.64-65.

같은 현실적 이유에 의해 일반 법원의 심사가 제한된다. 프랑스 법원은 2002년 헨느 항소법원(Cour d'appel de Renne)의 판결 이래로 심판의 판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배제를 인정하고 있다. 심판의 판정(비단 같은 단어인 arbitrage때문 만이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기로 명문 혹은 불문의 약속을 하였으므로 사적재판으로 볼 수 있다)은 법적 의미의 중재와는 전혀다르고 어떤 법적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미 1984년에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이데타는 경기규칙의 준수를 위해 내리는 경합에서 내려진 심판의 판정은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sup>38)</sup>

### 나. 유럽공동체법(판례)의 영향-보스만(Bosman)판결(1995)

80년대 후반부터 스포츠 분야에서의 통일화 현상과 함께 스포츠 활동이 예전과 달리 유희적 성격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영향력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프랑스 스포츠법은 공동체법과 판결의 영향을 받게되었다. 이른바 국내 스포츠 규정과 초-국가적 규범간의 관계설정이 앞서 본 스포츠 규범의 독자성과 더불어 같이 논의되고 있다. 도핑이나 경기장 폭력 등 스포츠 활동의 확대는 유럽공동체와 국제스포츠기구의 규범과 국내스포츠규범의 조화 혹은 통일화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는 유럽공동체법의 영향에 관해 유럽공동체법원(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CJCE, 유럽사법재판소로 번역하기도 한다)의 1995년 보스만(Bosman)을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벨기에 축구 리그의 선수인 보스만이 소속팀 리에쥬(RFC Liège)에서 프랑스 뉝케르크(Dunkerque)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케르크 팀은 리에쥬 측에 충분한 이적료(약 30만 유로에 해당)를 지불하지 못했고, 외국인선수 쿼터제 등의 규정 등에 의해 보스만 또한 프랑스 팀으로 이적도 못되고, 리에즈측의 낮은 임금을 거절한 후 실업에 따른 연금도 못 받는 등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보스만은 1990년 리에쥬 법원에 선수이적에 관한 규정이 유럽공동체협약 제 48조(현재는 유럽연합협약 제38조, 공동체 권역 내에서의 근로자의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 위반이라고 제소하였고, 1993년 리에쥬 법원이 유럽공동체법원에 선결이송절차(une question préjudicielle)를 실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995년 12월 15일 원고측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유럽공동체법원은 스포츠협회나 연맹의 규정에서 외국인선수들의 보유제한(쿼터제)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에 대해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보스만 판결이 가져온 파장은 계

38) C.E., 13 juin 1984, Association Clun athlétique de Mantes La Ville, req.n° 44648.

약이 종료한 선수는 구단의 동의나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이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스만 룰’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보스만 판결은 프랑스 콩세이데타에서도 수용되었는데, 프랑스 농구연맹이 국내 여자 농구리그 참가하는 외국 국적 선수(폴란드 선수 Lilia Malaja) 숫자를 제한하고 Malaja를 공동체 회원국 선수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유럽공동체와 제3국(당시 폴란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아니었다)간의 협약의 실질적 구속력에 반한다고 하였다.<sup>39)</sup>

## IV. 결론

스포츠는 법 없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법과의 결합은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sup>40)</sup> 특히 인간의 활동 가운데 법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헌법, 행정법, 민법, 노동법 등 국가의 실정법뿐만 아니라 스포츠 조직의 자율법의 규율을 받으며 양자가 때로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에 스포츠법의 독자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 가운데 스포츠 행정법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통해 스포츠법제의 선진화와 스포츠 공법의 체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sup>41)</sup> 현재 스포츠관련 대표적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등 체육을 범명에 사용하거나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등이 있는데 이들의 입법목적이나 정책목표가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나 실제로 입법자들이 스포츠 혹은 체육에 대한 개념정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 작성에 있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프랑스 스포츠법의 어떤 부분의 특징과 내용을 통해 우리 스포츠법의 특수성과 독자성 발견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체계성을 가지고 정비된 스포츠법전(Code du Sport)에 대한 내용과 제정 과정을 검토하였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경기대회, 생활스포츠, 방송을 통해 접하는 프로 스포츠 활동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수많은 자격증은 국가나 공권력 담당자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공법적 사안과 사법적 사안이 얽혀있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스포츠 영역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간섭은 스포츠가 가지는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에

39) C.E., 30 décembre 2002, Fédération française de basket-ball(FFBB)/ Lilia Malja, req.n° 219646.

40) 김용섭, “스포츠법제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통권 제39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2., 103면.

41) 김용섭, 위의 논문, 111면 이하; 동인, 스포츠 行政法의 現況과 課題, 스포츠와법, 창간호, 2000.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스포츠 자체를 대상하는 법 영역은 공익의 추구하고 스포츠 관련 주체들에 대한 법으로서 공법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어쩌면 스포츠법을 스포츠 행정법으로 말 할 수도 있고, 스포츠행정법은 문화행정법과 경제행정법의 교차영역일 수도 있다.<sup>42)</sup> 이는 공공서비스가 행정적 공공서비스와 상공업적 공공서비스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며, 문화법에 포섭되는 스포츠법과 스포츠 행정법제의 법전화 현상으로 나타난 프랑스 스포츠법의 특징이기도 한다.

앞으로 국내의 스포츠 법제는 체육과 스포츠라는 용어관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프랑스 스포츠법전과 같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본법 정비가 요구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선행연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교법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42) 김용섭, 앞의 논문(2008), 125면.

## [참고문헌]

- 김용섭, “스포츠법제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통권 제39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2
- 김용섭,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 한림법학포럼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1.
- 이광윤,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스포츠와 법 제9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2006.10.
- 임우택, “프랑스의 스포츠 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연구 제16집, 성신여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1998.2.
- 임재구, “프랑스 체육정책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4호, 한국체육정책학회, 2004.9.
- Code du Sport, 6e édition, Dalloz, Paris, 2011
- Frédéric Buy/ Jean-Michel Marmayou/ Didier Poracchia/ Fabrice Ricco, Droit du Sport, 2e édition, LGD, Paris, 2009
- Isabelle Da silva, “L’adoption du Code du sport: Concacration pour le droit du sport”, AJDA, Dalloz, 2007.
- Jean-Pierre Karaquillo, Le droit du Sport, 3e édition, Dalloz, Paris, 2011
- Charles Amson, Droit du Sport, Vuibert, Paris, 2010

(<https://tel.archives-ouvertes.fr/tel-00983442/document>)

<http://www.sports.gouv.fr/> (프랑스 도시체육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centrededroitdusport.fr/> (Aix-Marseille 대학교 스포츠법센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1318&dateTexte=20161123>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내용 검색, 레지프랑스)

## Résumé

# L' étude sur le droit du Sport en France

**Hoon Jeon**

Professo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ns un sens étymologique, le terme de «sport» vien de l'ancien français desport qui signifie «divertissement, plaisir physique ou de l'esprit». Ce mot desport se rapporte à des loisirs qui sont centré sur des activités physiques et mentales. Mais, ce point de vue ludique de l'activité sportive ne présente d'intérêt du recherche sur le Droit du Sport. En effet, un certain nombre de recherches coréenes avait pris le sujet du sport et l'administration sportif en France pour faire une comparaison avec le cas de Corée du Sud. Mais la recherche sur le droit du Sport n'était pas bien traité au niveau juridiquement organisé.

Dans cette perspective, nous avons passé en revue la naissance du droit du sport. L'étude en droit du sport remonte au vingtième siècle, à savoir une thèse de doctorat de R. Dieudonne(1906) et une analyse générale des relations du Sport et du droit par J. Loup en 1930. Cependant, une telle étude se contenten de montrer les définition doctrinal et jurisprudences sur l'activité sportif et ne relève pas de la conception du droit du sport. Mais nous voulons présenter des éléments de compétition organisée et son règle préparé à la différence du droit étatique.

Cela nous conduit à l'étude sur les institutions sportives françaises et les principales associations sportives et les règles sportives non seulement étatique et des règles supra-étatiques.

Enfin, ces résultats nous a permis d'améliorer notre point de vue sur le droit du sport coréen et de continuer une recherche comparative entre le droit du sport français et celui de coréen.

Mots clés: Sport, la définition et des éléments du sport, les règles du sport, Droit du Sport, l'autonomie du droit du sport, Association des sports, Exclus du contrôle judiciaire